

The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리를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사전 예약제 안내
 -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은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가 한정되므로, 지정된 기간 동안 본 아파트 홈페이지(http://www.thecentral-parkdream.com)를 통하여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신 분들만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예약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동반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신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체로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리,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600-2446)를 실시 할 예정이나, 간혹 폭주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 11. 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1. 11. 25)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 52961호(2021. 11. 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01-2번지
- 공급규모: 지하 5층, 지상 2 ~ 34층 1개동 아파트 총 257세대(일반분양 151세대, 조합 103세대, 보류지 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80세대(일반(기권추진) 특별공급 1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5세대) 포함
- 주차대수: 41대(아파트 330대, 근린생활시설 7대, 업무시설 74대)
- 입주예정일: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업업체(사업시행자 겸 위탁자): 백합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 시공사: 화성산업(주) ■ 분양대행사: (주)컬리너스 ■ 분양대금의 관리
-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백합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간의 사업약정 및 [사업대행자]장비 정비사업 차입금도 시설통과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주)에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공급계약 상 사업대행자로서 제반 의무를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매도자의 하자 책임 등)는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백합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합니다.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약시 표기	주택공급내역			기타 공급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종출구상세세대수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권추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1000808	01	061.9738A	61A	61.9738	23.6195	85.5933	39.4999	125.0932	10.6050	61	6	6	12	2	6	32	29	2																		
																				02	061.6537B	61B	61.6537	22.8548	84.5085	39.2959	123.8044	10.4706	64	6	6	13	2	6	33	31	2
																				03	084.9354B	84B	84.9354	27.7438	112.6792	54.1347	166.8139	13.9609	26	3	3	5	1	3	15	11	1
					합계					151	15	15	30	5	15	80	71	5																			

※ 평형 환산 방법: 공급면적(m)×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II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지정기간내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			
061.9738A	101	61	2층	1	106,110,000	286,890,000	393,000,000	39,300,000	2022.05.20	2023.01.20	2023.09.20	2024.03.20	2024.09.20	157,200,000					
					107,730,000	291,270,000	399,0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59,600,000					
			3층	2	109,350,000	295,650,000	405,0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62,000,000					
					110,970,000	300,030,000	411,0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64,400,000					
			6~19층	28	113,400,000	306,600,000	420,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68,000,000					
					115,560,000	312,440,000	428,0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71,200,000					
061.6537B	101	64	2층	2	104,760,000	283,240,000	388,0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155,200,000						
					106,380,000	287,620,000	394,0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157,600,000					
			4층	2	108,000,000	292,000,000	40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60,000,000					
					109,620,000	296,380,000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62,400,000					
			6~19층	28	111,780,000	302,220,000	414,0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41,400,000	165,600,000					
					113,940,000	308,060,000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68,800,000					
084.9354B	101	26	2층	1	143,910,000	389,090,000	533,0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213,200,000						
					150,660,000	407,340,000	558,0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223,200,000					
			6~19층	12	153,630,000	415,370,000	569,0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227,600,000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호 및 제6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취소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 ·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명이라든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공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간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권추진 특별공급(국가공유자, 장애인, 월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대구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IV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2021. 05. 2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자격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 등) 및 외국인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 합니다.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② 세대주 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④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IIII 청약예금 예치기준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분	대구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III 입주자자격 순위 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대구광역시/경상북도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75%) 및 추첨제(25%)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주택(토지인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격 요건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잔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의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예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추첨제 100%로 청약 접수 합니다.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제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권추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 12. 06.(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 ~ 17:30) (견본주택 : 10:00 ~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해당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경상북도 거주자)	2021. 12. 07(화) 09:00 ~ 17:30 2021. 12. 08(수) 09:00 ~ 17:30 2021. 12. 09(목)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자별 공동인증서를 청약용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인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벽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 ~ 16:00)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청약 및 금융인증서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서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산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Step 2. 주택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일자 청약연속]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 제외)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서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세액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탈락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일자 청약연속」,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세대구성원 동의」, 「모집공고일자 청약연속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는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 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지 및 등 · 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권추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 12. 15(수) · 확인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 12. 27(월) ~ 12. 30(목) (4일간, 10:00 ~ 16: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Home 앱에서 개별조회 ·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2순위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및 KB모바일인증서 · 로그인 후 조회 가능 	

VI 분양대금 납부 계약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나은행	845-910028-31805	백합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A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A-1001홍길동)

VII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정 개시일 전 입주 개시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5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실업주의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업주지정일에 해당 납부하여야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 기일이 지연될 수 있음.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일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 내부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함

■ 부대복